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현재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금 조성 이후 기금의 지출 이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이후 기금의 지출이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어 온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2018년에 제정된 조례로서,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와 북한 주민 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용도로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 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시 공모사업으로 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여 기금 조성 이후 지출 이력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는 타 회계 의존율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자치단체 191개 기금 중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존율 99.01%)이 포함되어 일반회계로의 통합 또는 수입구조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안건은 기금 존치의 실익이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3.12.31.)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30 호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금 조성 이후 기금의 지출 이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남북교류협력기금 영등포구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어 온 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